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10 선고 2021나289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

담당변호사 육삼신, 조세형

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E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주

변 론 종 결 2021. 11. 12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0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22. 선고 2020가단4483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,098,630원 및 그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7. 13.부터 2021. 12. 10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(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)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40,197,260원 및 그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7. 1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, 14행의 『주식회사 C(이하 '소외 회사'라 한다)와』를 『원고보조참가인과』로 수정하고, 그 아래 부분의 모든 『소외 회사』부분을 『원고보조참가인』으로 각 수정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『이행보증보험계약을』을 『이행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을』로 수정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.

『바.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에 의하면,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보증하는 피고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피고는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, 원고가 공시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는 연

9%이다.』

2. 주장 및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에서 제8면 제1행 사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한다.

『 다.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여부

1)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'부당히 과다한 경우'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, 계약의 목적 및 내용,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,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, 예상손해액의 크기,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,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,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,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).

2)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약정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배상액을 정한 것으로, 이는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지급할 손해배상액수를 미리 정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.

3)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예정금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각 증거,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

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200,000,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그 20%에 해당하는 40,000,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였으나, 개업 이후 영업실적이 예상매출액의 50%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온 점, ② 이러한 매출 부진에는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등 피고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외부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

채무불이행을 전제로 3,000,000원을 이미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할 때,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인다.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의 50%에 해당하는 20,000,000원(= 40,000,000원 × 50%)으로 감액하기로 한다.

라. 소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해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손해배상금으로 인정 가능한 구상금 20,098,630원(= 보험금 20,000,000원 + 2019. 6. 13.부터 2019. 7. 12.까지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6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8,630원) 및 그중 20,000,000원에 대하여 2019. 7. 13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인 2021. 12. 10.까지는 위 약정 연체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신재환, 판사 김정민, 판사 윤웅기